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성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1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이성배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
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
김재진, 김태수, 김형재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문성호, 민병주, 박성연,
박춘선, 서상열, 서호연,
신복자, 유만희, 윤종복,
이병도, 이봉준, 이상욱,
이은림, 이종환, 최민규,
허 훈, 황유정, 황철규
의원(30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 내 차양시설·비가리개시설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 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별표2의2 규정 외 대상은 가설건축물허가를 득하여야 함.
- 가설건축물허가대상은 가설건축물신고대상과 달리 건폐율, 용적률 등에 포함되며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등의 추가 절차도 있는바 이에 따라 설치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됨.
- 현재 초·중·고등학교 가설건축물 설치가 신고대상인 것과 달리 대학교는 허가대상으로 학교 내 차양시설·비가리개시설 설치 시 건폐율, 용적률에 차감을 받으며, 설치에도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됨.
- 이에 대학교 가설건축물 설치도 신고로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폭염, 우천 등에도 대학교 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장려함은 물론, 일반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교육시설 간 형평성도 맞추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별표2의2 차양시설·비가리개시설 중 기타 내용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추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2의 차양시설·비가리개시설의 기타란 중 “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”을 “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		
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				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			
용도	구조	면적	기타	용도	구조	면적	기타
차양시설· 비가리개 시설	제한 없음	제한 없음	·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·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(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)에 설치하는 것 ·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	차양시설· 비가리개 시설	제한 없음	제한 없음	·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·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(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)에 설치하는 것 ·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3조에 따른 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교 내 차양시설·비가리개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조례 제17조(가설건축물)제3항 별표 2의2에서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중 차양시설·비가리개시설의 내용을 추가(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3조에 따른 학교 내 →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3조에 따른 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내))하여, 차양시설·비가리개시설 설치 시 기존 초·중·고등학교 외에 대학교도 신고대상으로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